

#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평의원정수	재적평의원	참석평의원
11	11	7

I. 개최일 및 장소 : 2022. 11. 10.(목) 14:00, 줌 화상회의

- 참석 평의원 : (교직원) 강응섭, 유복곤, 방진희, 금지환  
(학생) 윤태복, 이철수, (외부) 윤경화

- 불참 평의원 : (학생) 김채현, (동문) 임경자, 유정원, (외부) 최성우

II. 개회 선언 : 재적 평의원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

## III. 자문 안건

- 제1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

## IV. 회의 내용

### 가. 제1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

- 강응섭 의장 :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한 후,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(8인) 중 개방이사 1인이 2023.02.13.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유로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, 이사회에서의 후임 개방 이사 선임 전 단계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3인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.
- 강응섭 의장 : 제1호 안건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(평의원)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(평의원) : 배포된 회의자료와 같이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, 관련 법령 및 정관 내용, 개방이사 선임 절차 및 추천일정 등 내용을 설명하다. (회의자료 제1호 안건)
- 강응섭 의장 :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통해 각 평의원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3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출석 평의원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다.

대표 간서명	유복곤	유복곤	방진희	방진희	금지환	금지환
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- 금지환 의원 : 동문 유정원 의원을 추천하다. (동의 : 강응섭, 재청 : 방진희)
- 이철수 의원 : 학생 김채현 의원을 추천하다. (동의 : 금지환, 재청 : 유복곤)
- 윤태복 의원 : 직원 금지환 의원을 추천하다. (동의 : 이철수, 재청 : 윤경화)
  
- 강응섭 의장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,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하다고 하여 대학평의원회 추천 의원으로는 유정원, 김채현, 금지환 등 3인으로 결정하였음을 선언하다.  
(찬성 7명 : 강응섭, 유복곤, 방진희, 금지환, 윤태복, 이철수, 윤경화 / 반대 0명)

## V. 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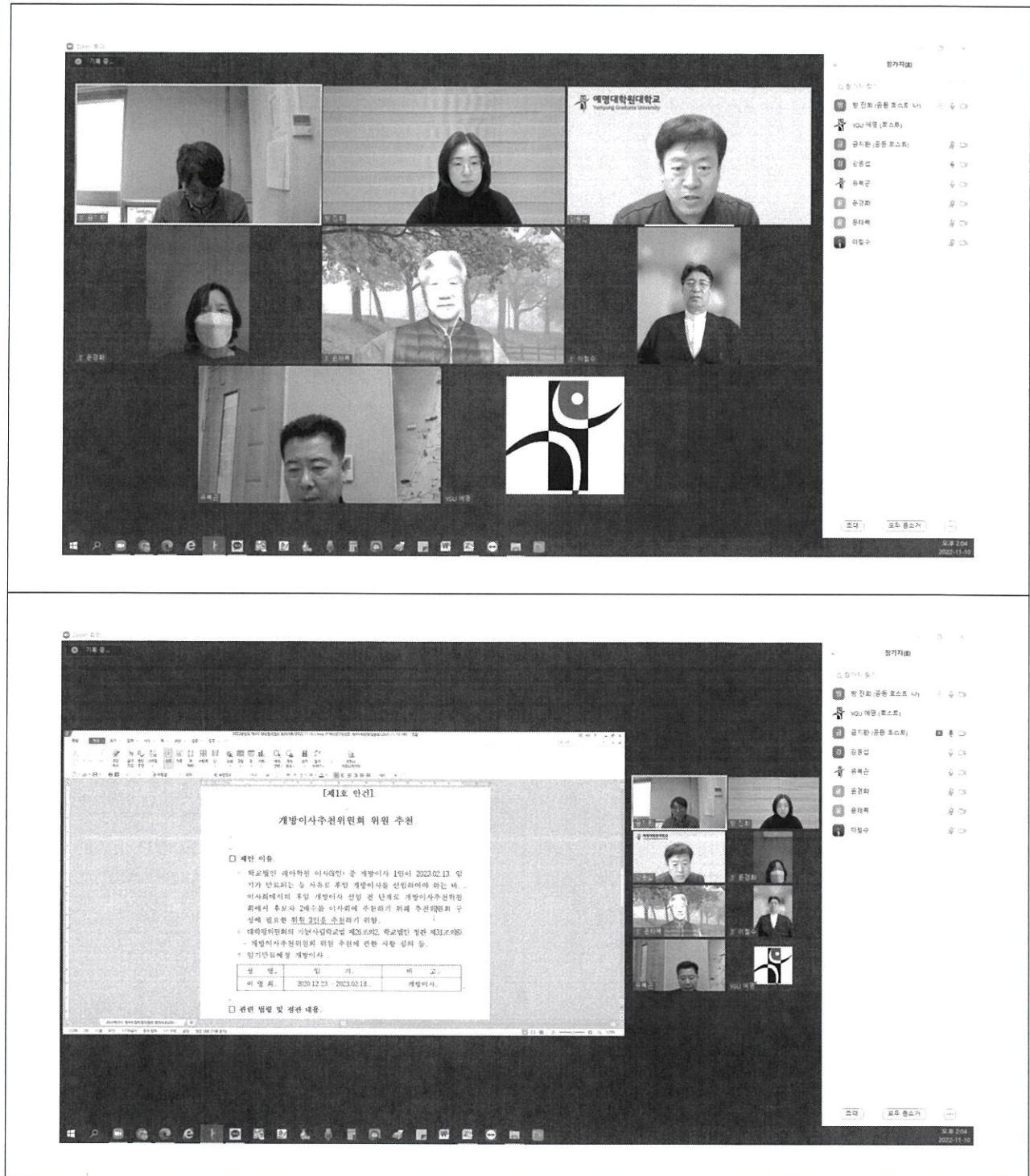
- 의장이 평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회의록에 대표 간서명할 평의원으로 유복곤 평의원, 방진희 평의원, 금지환 평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,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

2022년 11월 10일

의장 강응섭 강 응 섭  
평의원 유복곤 유 복 곤  
평의원 방진희 방 진 희  
평의원 금지환 금 지 환  
평의원 윤태복 윤 태 복  
평의원 이철수 이 철 수  
평의원 윤경화 윤 경 화

## ※ 화상회의 증빙사진



# **2022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**

일시 및 장소 : 2022.11.10.(목) 14:00, 줌 화상회의

심의 안건

제1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

**예명대학원대학교**

## [제1호 안건]

###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

#### □ 제안 이유

-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(8인) 중 개방이사 1인이 2023.02.13.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유로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, 이사회에서의 후임 개방이사 선임 전 단계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함
- 대학평의원회의 기능(사립학교법 제26조의2, 학교법인 정관 제31조의8)
  -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등
- 임기만료예정 개방이사

성명	임기	비고
이영희	2020.12.23. ~ 2023.02.13.	개방이사

#### □ 관련 법령 및 정관 내용

##### < 사립학교법(제14조) >
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,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함

##### < 법인 정관(제20조의5) >
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함
  -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,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
## □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(결정)

- 대학평의원회 회의 때 각 평의원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3인을  
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.  
의결함(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9조)  
\* 학교법인 추천 위원(2인) : 방진희, 박선영

## □ 참고사항(절차 및 추진일정 등)
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(5인) : 대학평의원회
  - 대학평의원회 추천 3인, 법인 추천 2인 / 2022.11.10.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 : 법인
  - 2022.11.11.까지(임기만료 3개월 전)
- 개방이사 후보자 2배수 추천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
  - 2022.12.10.까지(추천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, 이사회 전)
- 개방이사 선임 : 이사회
  - 2022.12.12.까지(임기만료 2개월 전)
- 관할청(교육부)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 : 법인
  - 2023.01.12.까지(임기개시 1개월 전)